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6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안 제2조)	4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안 제2조 등)	20
3. 등록의 결격사유 및 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33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영업점에 대한 관리 (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신설)	37
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휴업·폐업 신고 (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46
6. 인증심사대행기관 삭제, 등록의 취소 및 정지(안 제18조 및 제19조)	53
7. 종사제한, 범죄경력조회, 운전자격확인 및 본인일치 여부 확인, 보험가입 확인, 교육의무 등(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61
8. 종사자등의 자료제출의무 및 개인정보의 최소처리·보안조치 (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69
9. 서비스 약관, 서비스향상을 위한 의무, 개선명령 등(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73
10. 벌칙 및 과태료(안 제49조 및 제51조)	78
11. 부칙	84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221808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증제 시행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현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침해, 종사자의 안전 관리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취업 제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배달업 종사 제한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대여)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위승계, 휴업 및 폐업 신고,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등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6, 제17조의7 및 제19조).

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마. 소화물배송대행인증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인증사업자의 종사자에 게만 적용되던 종사자의 운전자격, 보험 가입 여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 등의 규제를 등록업 전환에 따라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등).

Ⅲ. 검토의견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안 제2조)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운송수단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3.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	나. ----- -----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드론-- ----- ----- ----- -----

현행	개정안
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 ----- ----- -----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송수단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운송수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당시 업역 침해 우려 등 기존 화물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여¹⁾ 당초에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업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였고,²⁾

1) 화물업계가 다른 운송수단을 인정할 경우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2020.12.9.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에서 4개 화물연합회(일반·개별·용달·주선)-국회의원-국토교통부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는 방안에 합의함.

2) 제21대국회,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0.12.24.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첨단배송산업의 성장을 위해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 배송수단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추가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³⁾·시행⁴⁾되어 운송수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한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⁵⁾를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및 종사자는 여전히 현행법의 규율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⁶⁾ 배달대행업 성장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⁷⁾

3) 제21대 국회에서 9건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2023.12.20.)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6)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업 및 종사자 모두 현행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생략)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배민커넥터, 쿠팡이츠 등 배달대행업계에서는 일반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배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배달대행업계에서는 기사 확보 차원에서 전업 배달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기 위해 종사자 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⁹⁾

【 범죄자 등의 종사제한 관련 현행법 규정 】

조문	주요 내용
제19조(인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19조의2(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아래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종사자가 위 종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함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8) 매일경제, 「누구든 짬날 때 알바 배달 킥이코노미 뜬다」, 2019.10.13.

-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부릉프렌즈’는 전기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며 탈것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업체에서 대여받아 배달기사로 참여 가능

9) 아시아경제, 「성범죄자는 배달기사 못 해…자격 강화에도 킥보드·스쿠터 빠져 구멍」, 2024.9.23.

조문	주요 내용
제19조의4(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 사자들의 운전자격 확인 등)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의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확인하여야 함.
제51조(과태료)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영업점(500만원 이하)
	범죄경력 확인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영업점(500만원 이하)

개정안은 개인형이동장치를 활용한 서비스를 현행법의 규율 범위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현재 배달대행업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생활물류 운송수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생활물류 시장의 지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화물배송대행 관련 종사자를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호하며,¹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종사 제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0)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도 이륜차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11) 무면허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법** 12)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활물류 운송수단의 다양성, 범죄자의 종사 제한 필요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등록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운송수단까지 이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생략)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라고 할 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스로틀형,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전거¹³⁾(파스형, 전동기만으로 구동되지 않는 자전거)도 포함하는데,

【 전기자전거¹⁴⁾의 유형(구동방식별) 】

「도로교통법」 전기자전거	[스로틀형(Throttle) 구동방식] 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 가능, 평상시 페달 주행) ②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③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자전거법」 전기자전거	[파스형(Pedal Assist System, PAS) 구동방식]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작동,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힘을 더해 주어 페달을 밟은 힘을 경감시키는 방식) ②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③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활용되는 전기자전거는 위의 두 종류 형태의 전기자전거가 모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외형상 두 방식의 자전거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14) 외형상 동일한 전기자전거임에도 구동 방식별로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구동방식에 상관 없이 양 개념의 전기자전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2201248)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도로교통법」 과 「자전거법」 상 ‘전기자전거’ 규정 현황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②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③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u>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u>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u>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u>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u>전동기 힘만으로 구동이 가능</u> (평상시에는 페달로 주행)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힘을 더해주어 페달을 밟은 힘을 경감시키는 방식 (<u>전동기만으로는 구동되지 않음</u>)
			↓
			전기자전거

둘째, 새로운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차체 중량이 30kg 이상)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이륜자동차가 아니면서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에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운송수단의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생활물류법」 포함 여부
19.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현행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제외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전기자전거 -전동휠(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②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③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포함 (개정안: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대상에서 제외되며,¹⁵⁾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수단, 예를 들면 화물용 전기자전거 등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이상인 전기자전거¹⁶⁾ 또는 전동휠¹⁷⁾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안전성 및 운송 적합성 등이 확보된 운송수단은 실제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참고로 최근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주요 국가 및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도입되는 등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어, 국내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며,¹⁸⁾ 경북 김천에서

15)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제19호나목은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하고 있어, 가목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나목은 “이륜자동차가 아닌”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법제처-24-0923, 2025.2.28.)

16) 디지털 투데이, 「사람도 짐도 다 태운다...전기자전거에 픽업트럭 ‘컨덕터플러스’」, 2025.6.17.
- 최대 적재용량 약 211kg으로 무거운 짐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활용 가능, 무게는 약 80kg

17)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이미지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2023.4.25.

□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 국가별 중량 제한 : (독일) 300kg (프랑스) 650kg (미국·영국·일본·캐나다) 제한 없음

<사례>

① **아마존 :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중,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활용 목표

② **DHL :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도입

○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

** 독일 DHL 실증('18년) 결과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내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을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여 근거리 배송 효율과 안전성을 검증 중임.¹⁹⁾ 향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상용화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화물용 전기자전거 예시 】

화물칸 전방부 착형		
※ 출처	https://www.betanews.net/article/687573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519
화물칸 후방부 착형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87437?sid=101	https://www.portnews.com.au/story/4593602/pedal-powered-pizza/
사륜형		
※ 출처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8119	https://www.timeout.com/newyork/news/ups-will-now-deliver-your-packages-on-these-tiny-electric-quad-cycles-06162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19) 연합뉴스, 「주차장·화물전기자전거 활용 택배배송 실증…김천특구 3년 연장」, 2025.7.22.

셋째, 현행 인증제 체제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도권 밖에 존재함에 따라 배달업 종사제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운전자격 확인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현행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은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해관계자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소비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조문	내용	비고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 2024.1.16.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만 적용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2024.1.16. 개정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 2024.1.16. 개정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조문	내용	비고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 2025.12.2. 개정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 2025.12.2. 개정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交通安全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더라도 자동차, 자전거, 도보를 이용한 화물배송은 여전히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유형의 배송업무를 수행함에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제한 규정, 종사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의무교육 이수 및 운전자격 확인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는 개정안의 등록제 도입과 연계하여 등록제 도입 취지, 종사자 관리공백 해소, 배송수단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운송수단까지 제도권에 편입하여 종사자 관리 및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라이더유니온에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카카오퀵 등 사업자가 이미 6~7년 전부터 승용차를 운송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승용차가 광범위하게 소화물배송대행업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승용차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종사제한, 보험 및 안전교육이수 의무 등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안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륜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또는 장소)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소화물배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러한 경우 종사자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각종 확인 의무(사업자의 종사자 1)운전자격, 2)범죄경력, 3)보험가입여부, 4)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에서 제외되어 사고 발생 위험 등이 증가하고 있음. 소화물배송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배송 시에도 안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의견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교육, 보호장비 등 적용요건을 현행 이륜차 체계에 단순 준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적용 기준(대상정의, 필수요건, 확인방법, 위반 시 조치 및 책임범위 등)이 필요하며, 기준이 미비된 상황에서 운송수단의 범위만 확대할 경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며 제도의 취지인 안전강화에 역행할 수 있음. 관련 기준이 정비되기 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의 범위 확대는 유보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료됨.

3) 라이더유니온

현재 소화물배송대행 업계에서는 승용차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카오퀵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는 이미 6~7년 전부터 승용차를 운송수단이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나 승용차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종사제한이나 보험 및 안전교육이수 의무 등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안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이륜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운송수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선 기존 화물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업역 침해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한 소화물배송

대행은 본 발의법률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일감을 받으며,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재와 같이 어떤 규제도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안 제2조 등)

개정안은 현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2. (생략)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4.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 제17조제1항에 따라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u>	나.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한</u> -- --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u>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u> ----- ----- ----- -----.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6.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u>: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u>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 7. (생략)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② (생략)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② <u>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③ <u>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④ <u>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u>	나.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7. (현행과 같음) 제9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 1. <u>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u> 2. <u>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u> ② <u>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u>

현행	개정안
<u>다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④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가. 검토의견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달대행, 퀵서비스 사업에 대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²⁰⁾

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당시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및 등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한 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COVID-19 팬데믹 시기 급속도로 성장한 배달서비스산업의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제도 도입 초기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자유업**으로 두어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우수업체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였음.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구분 】

구분	사업방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필요 (일반화물자동차, 개인화물자동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 (개정안) 등록	-

-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제 도입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5년 기준 8개에 그쳐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5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현황(8개社) 】

구분	기업명	인증연월일
통합형	우아한청년들	2025. 9. 24.
	쿠팡이츠	2025. 11. 12.
	카카오모빌리티(퀵서비스)	2025. 9. 16.
분리형	바로그	2025. 9. 18.
	부릉	2025. 11. 12.
	인성데이터(퀵서비스)	2025. 11. 13.
	래티브	2025. 12. 3.
	로지올	2025. 9. 18.

* 통합형 : 정보망 운영 및 직접 배송서비스가 통합된 형태

* 분리형 : 정보망을 통해 지역대행업체가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형태

※ 자료 : 국토교통부

【 배달플랫폼 운영사 현황(2025.3. 기준) 】

연번	사업자명	인증여부*	연번	사업자명	인증여부
1	주식회사 로지올	인증	13	주식회사 플러스앤소프트	
2	유한책임회사 플라이앤컴퍼니		14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	인증
3	주식회사 부릉	인증	15	(주)더원인터내셔널	
4	주식회사 바로그	인증	16	주식회사 대림종합상사	
5	주식회사 래티브	인증	17	삼시세끼	
6	주식회사 팝업		18	런닝맨 배달대행, 총판	
7	더가치플래닛 주식회사		19	디케이플랫폼 주식회사	
8	주식회사 바다코리아		20	(주)순간이동	
9	주식회사 커넥트9		21	바나플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	인증	22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인증
11	주식회사 비온드아이앤씨		23	주식회사 씨엠엔피	
12	(주)오라인포		24	인성데이터 주식회사	인증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2026년 4월 인증유지기업 기준).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6.

특히 배달업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종사자 및 시민 보호를 위하여 범죄자 종사제한, 보험가입 확인 의무 등 안전규정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가 인증사업자에게만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비인증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현행 인증제도가 입법취지와 달리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조문	내용	비고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 2024.1.16.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종사자에만 적용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2024.1.16. 개정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 2024.1.16. 개정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 2025.12.2. 개정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 2025.12.2. 개정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특히 현재 인증제도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화물배송 공제 조합을 통한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있으나 이외에 참여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우수기업 유인을 위해 도입한 인증제가 인증기업에만 추가적인 안전규제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인증 참여를 기피하거나 이탈하려는 유인²¹⁾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미인증 사업자들을 법적·제도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인증사업자 및 인증사업자의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운전자격, 보험가입 여부, 교육이수 의무 등의 규제를 모든 사업자 및 종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유사한 취지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그와 계약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어 규제대상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21)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6. 4.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3조에 의거, 인증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업계에서는 공제조합 가입만이 유일한 혜택으로 여겨지며 가입 시 자금출자에 대한 부담도 일부 존재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에서 매년 1회 이상 인증사업자 대상의 업계 의견청취 회의에서도 이러한 인증혜택 부족은 지속적으로 언급됨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재옥의원안, 2209923)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증사업자로 하여금 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178호)이 시행 예정(보험가입여부 : 2026.6.3., 교육이수 여부 : 2026.12.3.)이므로 이를 사업자 전체에 확대하려는 등록제 도입은 인증사업자에 대한 해당 의무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등록제 도입으로 의무사항을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²²⁾,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²³⁾의 안정적인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의무 위반 시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등록제 도입 이전에 해당 의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제도 시행 및 성과 분석 이후 이를 전체 사업자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인증사업자 업계에서는 보험확인 등 개정 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체 확인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관련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미투자·신규 사업자는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기존 인증사업자의 운영 방식을 활용해 제도를 이용하여 인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온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어 원만한 제도 안착을 위한 시행 유예와 기존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등록제 규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들이 교육이수·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현행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제 도입 이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등록제의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인증사업자 업계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택배업과 다르게 영업점 및 종사자가 특정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플랫폼 및 쿠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자유롭게 계약하는 복잡한 다중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어렵고, 기준·시스템 정비 없이 사업자에 대한 의무만 연속적으로 도입될 경우 그 비용과 리스크는 업계 전반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배달 관련 산업은 기술 혁신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고도로 다양화·다변화되고 있는 성장단계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유연한 사업 모델을 가진 중소기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대형사업자 위주의 독점적 산업구조를 야기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셋째, 안 제17조제1호는 등록요건으로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중개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핵심 수단²⁴⁾임에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등록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등록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특히 임의적 인증제가 의무적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경우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기준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이므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등 적정 요건을 갖춘 배달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달업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현행 인증사업자만 적용하는 종사자 4대 안전규정* 확인 의무를 모든 배달 등록 사업자에게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종사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사업자의 종사자 ¹⁾운전자격, ²⁾범죄경력, ³⁾보험가입여부, ⁴⁾교통안전교육이수 여부 확인

2)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의견

법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인접한 시기에 등록제까지 추가 도입되는 상황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임. 현재 인증사업자는 개정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체확인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관련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제 도입 시 신규 사업자는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도 기존 인증사업자의 운영방식을 활용해 제도를 이행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비용절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우위로 이어져 인증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온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음. 인증사업자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원만한 제도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택배업과 다르게 영업점 및 종사자가 특정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자유롭게 계약하는 복잡한 다중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어려움. 또한 배달 관련 산업은 기술 혁신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고도로 다양화·다변화되고 있는 성장단계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유연한 사업 모델을 가진 중소기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대형사업자 위주의 독점적 산업구조를 야기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음.

3)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화물사업의 제도권 내 관리 필요성 및 안전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업계 역시 공감하나, 공적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함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선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적확인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반이 선행적으로 마련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등록제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 이탈 및 운영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등록의 결격사유 및 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현행	개정안
<신설>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개정안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유사하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의2제5호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제17조의2제1호(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해당 사유 자체가 해소되면 결격사유도 소멸하므로 중복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2년의 결격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제17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아닌 “제5호”에 해당되므로 오기를 정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²⁵⁾와의 구분을 위해 **안 제17조의2 및 제6조의 조 제목**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및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5)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신설)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9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

현행	개정안
<신 설>	<u>실로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④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u> <u>제1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제17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u> <u>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u> <u>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u> <u>3.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u> <u>4.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확인</u> <u>5.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확인</u> <u>6.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플랫폼 기업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배송종사자를 직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²⁶⁾ 주로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영업점(배달대행사)에 소속된 종사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증사업자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영업점은 2025년 기준 3,358곳으로 나타났다.

【 인증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분리형 플랫폼)와 계약된 영업점 추이 】

연도	분리형 플랫폼 인증사업자 (퀵서비스사업자 제외)	분리형 플랫폼 인증사업자와 계약된 영업점 수
2022	5	4,804
2023	5	5,064
2024*	5	3,797
2025**	4	3,358

* 2024년의 경우,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배달대행사(영업점)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던 인증사업자가 2024년 말 인증취소가 되며 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지역배달대행사(영업점) 파악 불가.

** 2025년의 경우, 분리형 플랫폼의 신규인증사업자 없이 1개 분리형 플랫폼사가 인증취소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6)

26) 전자신문, 「배민, 딜리버리N 청산 ... 정규직 라이더 고용 실험 실패」, 2025.11.24.

- 배달의민족이 정규직 라이더를 고용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인 '딜리버리N'을 청산하면서, 지난 2022년 시작한 배달의민족의 정규직 라이더 도입 실험이 실패로 나타남(많은 라이더가 프리랜서 라이더로 전환, 추가로 지원하는 라이더가 없음).

안 제17조의4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의 거래 상대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상품 등이 분실·파손되는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 또는 종사자와의 연대를 통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위탁관계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정 연대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등록제로 운영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구조의 차이를 고려할 때 택배서비스사업에 적용되는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란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택배서비스사업과 달리 ‘중개’ 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임.²⁷⁾

이에 따라 소비자→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구조를 가지는 택배서비스사업과 달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특히 배달업에서는 다양한 구조의 위탁구조를 가지게 됨.

플랫폼사가 배달대행사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분리형), 음식점이 배달 업무를 배달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구조, 즉 음식점→영업점(배달대행업체)→종사자(라이더)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플랫폼회사)는 배달대행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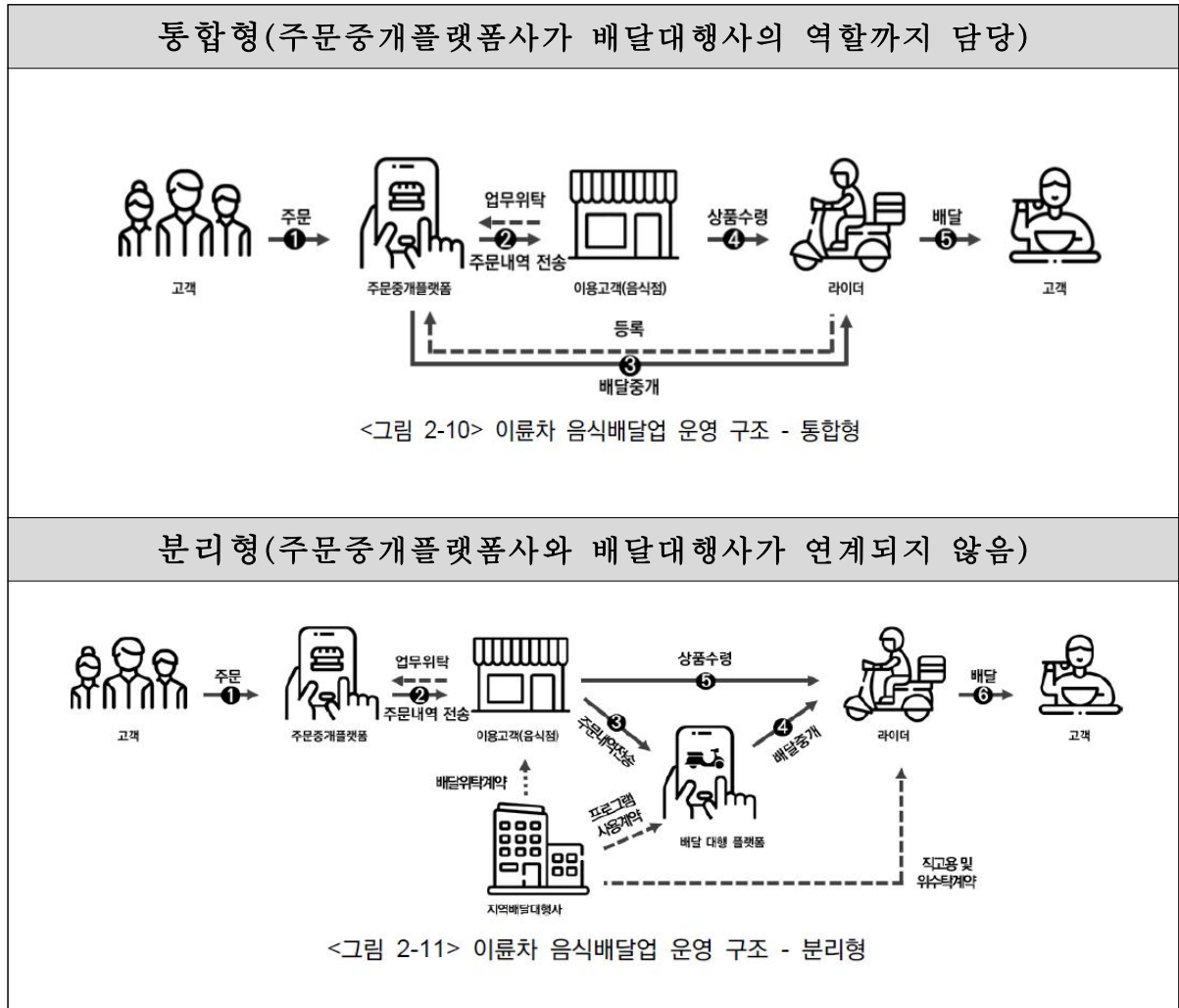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정보통신망 기반의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배달대행업체는 플랫폼회사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됨.



※ 자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 2024.

택배서비스사업에서 사업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이행을 위해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고 영업점은 택배회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화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중개기능만 수행하는 플랫폼회사는 프로그램만을 배달대행업체에 제공하고 배달대행업체가 음식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평적·중개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운송계

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종사자에 대해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게 택배의 손해배상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수준의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 운영구조와 괴리될 우려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7조의5** 영업점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점(배달대행사)의 종사자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자를 통해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계에서는 택배 산업 등과 달리 배달 산업은 영업점 및 종사자가 특정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지 않고 여러 플랫폼과 자유롭게 계약하는 다중계약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배달 산업 내 영업점 등은 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가 영업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경영권과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범죄경력·자격·교육·보험 확인의무 사항에 대한 관리는 공적 시스템 확인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자는 의무사항 수행 안내, 미이행 시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관리’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수행가능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및 영업점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영업점의 종사자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여 영업점의 체계적 관리와 종사자 및 소비자의 안전·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2)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의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종사자나 영업점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채용·배치·현장 안전조치·교육이수 확인 등은 개별 영업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이 이를 상시 확인·감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배달산업 내 영업점은 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영업점 내부의 노무관리를 직접 감독하는 것은 타 사업자의 경영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영업점 소속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권한이 없는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없으며, 권한과 책임소재 불일치 문제로 이를 악용한 영업점과 종사자 간 분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현장 상시감독, 개별 종사자 통제, 진위판별 등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은 관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적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시스템상 조치(의무사항 수행 안내, 미이행 시 활동 제한 등)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로 관리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휴업·폐업 신고 (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인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양수인·상속인 등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17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u>

현행	개정안
<신 설>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u>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⑤ <u>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u> <u>제17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u>

현행	개정안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④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u> ⑤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등록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과 유사하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이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시 등록받은 영업의 휴업·폐업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7조의6제3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시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안 제51조제1항은 제17조의6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²⁸⁾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 간 용어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등록제인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지위승계 시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28)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17조의6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지위승계는 행정청의 심사·수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제17조의6제1항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택배서비스사업과의 일관성 및 지위승계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지적 성격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를 부정하고 있으나,**²⁹⁾ 안 제17조의6제1항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위승계를 부정하는 단서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9)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안 제17조의6제2항은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위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할 의무를 두고 있으나,

안 제19조제1항제5호³⁰⁾에 따르면 제17조의2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당연취소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면제됨.

따라서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합병일로부터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한 경우 안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하여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합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하지 않아 등록취소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위승계 의무와 등록취소 규정의 기간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 정합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0) 제19조(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인증심사대행기관 삭제, 등록의 취소 및 정지(안 제18조 및 제19조)

개정안은 인증제를 폐지함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 제>

현행	개정안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	제19조(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현행	개정안
<u>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u>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u>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u> 5.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증심사대행기관 근거 삭제(안 제18조)

인증제 폐지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18조 삭제에 따라 제18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들을 함께 삭제하여야 하나, 제45조 청문³¹⁾ 규정에서 제2호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삭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1)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등록의 취소(안 제19조)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제2호(등록요건 미충족), 제3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제5호(결격사유에 해당) 또는 제6호(다른 자에게 등록증 대여)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취소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되, 전국적인 사업망을 구축하여야 하여 등록취소만을 규정한 택배서비스사업과 달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배달·퀵서비스 등 특정 지역만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째, 현행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³²⁾는 범죄경력 확인, 운전자격확인, 보험가입 여부 확인, 교육이수 확인의 안전규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부 등록취소기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한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규제는 강화된 반면, 현행 인증취소 사유보다 등록취소 사유는 오히려 완화되어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종사자의 안전 및 시민보호를 위한 의무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종사자의 안전 및 시민보호를 위해 도입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육이수 확인 의무는 개정 논의 당시 운전자격 및 범죄경력

32)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확인 의무와 같이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필요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와 과태료를 제도의 안정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함께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³³⁾ 이를 등록취소 사유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안 제19조제1항제2호(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7조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등록취소 및 정지 사유에서 누락하고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또한 유사하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제5조제1항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33)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9.24.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필수적 취소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않은데,³⁴⁾

안 제19조제1항제2호(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따르면 경미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의적 취소사유,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현행법에 취소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보완 필요

셋째, 안 제19조제1항제5호 단서는 결격사유인 제17조의2 “제5호”³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호”³⁶⁾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및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현행법의 택배서비스사업 규정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5) 5.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6)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종사제한, 범죄경력조회, 운전자격확인 및 본인일치 여부 확인, 보험 가입 확인, 교육의무 등(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개정안은 인증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체결 금지 의무, 범죄경력조회 의무 등을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고, 본인일치 여부 확인 의무를 신설하여 종사자의 본인일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의 위탁을 중단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생략)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 ----- -----.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현행	개정안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 ----- -----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1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 -----.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 -----.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현행	개정안
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략)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 ③ ----- ----- -----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현행	개정안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 ----- ----. <u>제19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등의 자료 제출의무) ①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게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u> <u>2.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 인 확인</u> <u>3.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u> <u>4.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u>

가. 검토의견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배달업 분야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³⁷⁾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이륜차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며 내국인 배달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37)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2026.3.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무자격 외국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대행 앱 이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³⁸⁾

이에 개정안은 등록제 전환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를 사업자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업무의 위탁을 중단하도록 하여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 제19조의7은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 및 유출 우려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사업자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자 및 영업점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정·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종사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38)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1.

따라서 해당 의무를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기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³⁹⁾과 같이,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확인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자 확인 의무사항 관련 공적확인시스템 보유 현황(2026.4. 기준)】

항목	확인 시스템	확인 방식 등 관련 현황
범죄경력확인	X	◆ 경찰청 범죄경력시스템 활용 ◆ 사업자가 시스템상 종사자가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일일이 수기 확인 중 (자체 실시간 확인 불가)
보험가입여부 확인	X	◆ '27년 이후 공적 확인 시스템 구축 예정 ◆ 구축 전까지는 사업자 자체적으로 가입 여부 확인 필요
교육이수 여부 확인	X	◆ 교육 이수증 확인 시스템 필요(하위법령 입법 진행 중) ◆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근거 없음
운전자격 확인	O	◆ 한국교통안전공단 API 연동을 통해 자격 여부 실시간 확인 중

※자료 : 인증사업자 제출 자료 재구성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모든 배달 사업자에게 종사자 4대 안전규정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명의도용 등 예방을 위해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기존 인증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종사자 및 소비자의 안전·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2)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의견

개정안은 등록제 체계 하에서 종사자 관련 확인의무 사항을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대량·상시·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위와 같이 공적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민간(사업자·영업점)에서 직접 확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검증의 불확실성 ▲검증 지연에 따른 배달업 종사자 생계 부담 ▲운영비용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종사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는 등록제 도입 유무가 아니라, 공적 확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8. 종사자등의 자료제출의무 및 개인정보의 최소처리·보안조치(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개정안은 범죄경력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자료제출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제출받은 원본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7(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료 제출의무)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2. 제19조의4에 따른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3. 제19조의5에 따른 보험 가입 4. 제19조의6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서

현행	개정안
<신설>	는 아니 된다. 제19조의8(개인정보의 최소화처리 및 보안조치)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9조의7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본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치·열람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안 제19조의8은 제19조의7에 따라 종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출받은 범죄경력확인, 운전자격 및 본인확인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의 파기⁴⁰⁾에 관한 조문으로, 제출받은 원본 서류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

40)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의 안전조치의무⁴¹⁾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조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⁴²⁾

이에 안 제19조의8제2항과 같이 보안조치·열람통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 없이, 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출받은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처리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4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안 제19조의8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개인정보 파기 및 보안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서비스 약관, 서비스향상을 위한 의무, 개선명령 등(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개정안은 등록제 도입에 따라 서비스약관, 서비스향상을 위한 의무 등 인증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정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서비스약관) ① ~ ④ (생략)	제33조(서비스약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u>인증을 받는 때</u> 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 ----- ----- ----- <u>등록(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u>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생략)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제39조(<u>개선명령</u>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	제39조(<u>개선명령</u>) ----- ----- ----- -----

현행	개정안
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u> 1. ~ 5. (생략)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u>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u> 1.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 -----

현행	개정안
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3. (생략) 4. <u>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5. (생략) ② ③ (생략)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9조제1항에 따른 <u>인증의 취소</u>	----- ----- ----- ----- ----- ----- ----- -----. 1. 제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u>등록요건</u>----- ----- 2. 3. (현행과 같음) 4. <u>택배서비스사업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u>----- ----- 5.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청문) ----- ----- -----. 1. 2. (현행과 같음) 3. -----<u>등록의 취소 및 정지</u>

현행	개정안
4. (생략) 제4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u>등록</u> 또는 <u>인증</u>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u>제18조제1항</u> 또는 <u>제46조제3항</u>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략)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18조제1항</u> 또는 <u>제46조제3항</u>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수료) ① -----<u>등록</u> 등----- ----- ----- ----. -----<u>제46조제3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46조제3항</u>----- ----- ----- ----- ----- --.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기존 자유업 체계에서 인증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같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협회의 근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협회의 근거로 변경하는 등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33조제5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에서 변경등록 관련 조문은 ‘제17조제2항’⁴³⁾에 해당하여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43) **안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능력, 중개시스템 구축·운영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2.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벌칙 및 과태료(안 제49조 및 제51조)

개정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등록제 전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u> 6. <u>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u> 7.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u>	제51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현행	개정안
8.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설> <신설>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 9의4.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	8. 제17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7조의6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9의2. ----- ----- -----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9의3.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 9의4. -----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

현행	개정안
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6조제3항----- ----- ----- ----- --.

가. 검토의견

1) 벌칙(안 제49조)

개정안은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벌칙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제17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서비스사업⁴⁴⁾과 유사한 수준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임.

44)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과태료(안 제51조)

등록제 전환에 따른 의무 신설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7조의7제5항은 사업을 휴업·폐업할 경우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하게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휴업·폐업 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⁴⁵⁾ 현행법에 따라 기존 인증제에서도 인증이 취소된 자가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⁴⁶⁾ 등록증 반납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5)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6) 제19조(인증의 취소)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둘째, 안 제19조의4는 운전자격 확인 의무 외에 ‘본인일치 여부’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종사자등의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업무의 위탁을 중단’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제51조제1항제9호의4⁴⁷⁾는 신설된 본인일치 확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안 제19조의4의 의무 내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39조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권고의 근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로 개정하였으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같이 제51조제1항제14호⁴⁸⁾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47)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4.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48)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11.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미인증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은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인증사업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인증사업자를 등록된 사업자로 간주하고, 등록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유예기간(1년) 내에 등록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2조제2항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미인증사업자’는 **현행법** 및 **개정안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 현행법에 따른 인증은 임의적 사항으로 미인증사업자도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년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사업자와 미인증사업자를 구별하여 경과조치를 달리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고,**

현행법 제정 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점⁴⁹⁾을 고려할 때,

인증사업자와 미인증사업자 구별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

49) 부칙 <법률 제17911호, 2021.1.26.>

제5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